

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1. 신청인

|       |  |           |  |
|-------|--|-----------|--|
| 법 인 명 |  | 사업자등록번호   |  |
| 대표자성명 |  | 업 태 · 종 목 |  |
| 소재지   |  |           |  |

2. 환급신청 명세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결 손 사 업 연 도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~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직전사업연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
| ③결 손 사 업 연 도                | ⑥결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결 손 금 액                     |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④직 전 사 업 연 도<br>법 인 세 액 계 산 | ⑧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⑨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⑪공제감면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⑤환 급 신 청 세 액<br>계 산         | ⑫차감세액 ( ⑩ - ⑪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 ( ⑬ = ⑩ 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⑭차감할 세액 [ ( ⑧ - ⑦ ) × 세율 ] [ ⑭ ≥ ( ⑩ - ⑫ ) ]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⑮환급신청세액 ( ⑬ - ⑭ ) ( ⑮ ≤ ⑫ )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국세환급금계좌신고 | ⑯예 입 처 | 은행 (본)지점 |
|           | ⑰예금종류  |          |
|           | ⑱계좌번호  | 예금       |

「법인세법」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법 인) (인)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⑥결손금액란 :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 : 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,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 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⑨·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.
5. ⑩산출세액란 : 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 :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⑩산출세액란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⑭차감할 세액란
  - 가.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 - 나.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8.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